



FMD, 힘을 모으고 힘을 내서 막아내자

대한한돈협회



우137-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1-19 제2축산회관 3층 / ☎(02)581-9751 ~ 4, 8 / Fax581-9768 ~ 9 담당:농가지원부

문서번호 한돈협지 310-2호

시행일자 2024. 01. 11.

수신 임원 및 지부(회)장

참조

선결	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	
	시간			
	번호		공람	
	처리과			
	담당자			

제 목 바이오가스 시설설치 의무화 대응 진행경과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

1. 지난 22년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화의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.

2. 이에 정부에서는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시 협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서 과징금 부가유예 신설 및 민간의무생산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.

3.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 대응 진행경과 및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(회)에서는 해당사항을 회원농가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 대응 진행 경과 및 시행령·시행규칙 주요 변경사항 안내 1부. 끝.

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



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 대응 진행경과 및 시행령·시행규칙 주요 변경사항 안내

가. 현황 및 경과

-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안 입법 발의
 - 송옥주 의원('21.6.30), 임이자 의원('21.9.01)
- 민간의무생산자 축산농가 포함 **반대의견 제출**('21.7.16), 환경부 장관미팅('22.3)
-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입법 공청회('22.11.23),
-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('22.11.29), **바이오가스 촉진법 공포**(12.30)
- 바이오가스 의무화 법 통과 이후 시행령/규칙 개정예 계속 반대 활동 전개
 - 국무조정실 방문 2회, 법제처 방문, 국회 국감질의, 농림부 장관·실장 면담 등
 - 국무조정실 중요 심사과제로 선정되어 위원회 상정 심사
- **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**(23.12.26), **시행규칙**(23.12.28) 공포

나.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령 주요변경 내용

-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범위 : 당초 2만두(19개 농가)→**25만두 이상인 양돈농가(약 9개소)**
 -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의 경우 200톤/일 이상
- ② 민간의무생산자 **바이오가스 설치 비용** 우선 지원 (전액 또는 일부 지원)
-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**준비(유예) 기간 5년 부여** (과징금 부과 유예)
 - ※ 인허가 과정(폐기물처리업, 환경영향 평가)등으로 인해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함.
- ④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은 경우 (생산목표량의 25%까지 인정, 정화방류 및 바이오차 등)
- ⑤ **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로 인한 준비(유예)기간 종료('29년) 전 규제 타당성 재검토**

다. 후속 조치 사항

- 규제의 재검토 기간 내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추가 규제 개선 요구 예정
- 바이오가스 민간의무 생산자 축산농가 제외 법 개정 국회활동 예정